

1. 개정이유

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7311호, 2020. 5. 26. 공포, 2020. 11. 27. 시행)됨에 따라,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확대하고 과태료·벌칙금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·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기준 2배(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) 수준으로 부과하던 벌칙금·과태료를 3배(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)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(안 제31조제4호)
- 나.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동승보호자 추가(안 제31조의2 제2항, 제5항)
- 다.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,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벌칙금 부과기준을 정비(안 별표6, 별표8)
- 라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·정차 위반 시 벌칙금·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(안 별표7, 별표10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, 9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호 중 “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”을 “법 제2조제23호 각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 교육시설”이라 한다)”로, “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”을 “어린이 교육시설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제2항 중 “사람은”을 “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동승보호자는(이하 “동승보호자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운전자는”을 “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2호 “운전자”를 “운전자 및 동승보호자”로 한다.

별표6 표 제10의3호 및 제10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11의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6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8조제4항 본문 관련)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과태료 금액
10의3.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	제160조제1항 제8호	30만원

10의4.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	제160조제2항 제4호의5	8만원
11의4.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	제160조제2항 제4호의4	8만원

별표7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7]

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(제88조제4항 단서 관련)

위반행위 및 행위자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
3.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(14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(13만원)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

별표8 표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의3호를 삭제한다.

[별표 8]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 (제93조제1항 관련)

범칙행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
1의2.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(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)	제53조제1항·제2항, 제53조의5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8만원

별표10 표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0]

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제93조제2항 관련)

범칙행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
6. 정차·주차 금지 위반 가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 금지 위반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 금지 위반	제32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7. 주차금지 위반 가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위반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위반	제33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
8. 정차·주차방법 위반 가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 방법 위반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방법 위반	제34조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9. 정차·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가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나.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·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	제35조제1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9만원 4) 자전거등: 6만원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7 및 별표10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<u>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</u>	제3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(이하 “어린이 교육시설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1조의2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(생략)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<u>사람은</u>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	제31조의2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사람 및 법 제53제3항에 따른 동승한 보호자(이하</u>

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	“동승보호자”라 한다)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④ (생략)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<u>운전자는</u>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	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</u>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 2. <u>운전자</u> 교육확인증 : 어린이 통학버스의 내부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운전자 및 동승보호자</u> 교육확인증 :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